

水産物 流通關聯 基金運營의 改善方案

머리말

최근의 국내의 여건변화와 수산업 환경의 변화는 수산물 수급과 가격정책에 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수산물 유통개혁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시점에 와 있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시장지향적인 경제정책과 정부재정의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물 가격정책방향 재검토와 설득력 있고, 책임 있는 기금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되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관련기금관련 연구는 다른 연구주제나 농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안기금의 효율적 운영자체에만 한정하지 않고 수산물 가격안정정책이라는 총체적인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기존의 수산부문 농안기금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산물 가격의 성격을 수산외 부문과 연계하여 분석하면서 그 해결점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가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소비자 물가지수의 분석을 통해 수산물 가격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금독립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기금의 형태에 따른 선결문제를 점검하여 향후 정책입안자가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금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적자개선의 문제나 가격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그 방향만을 제시하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가격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교한 추가분석이 요구되는 만큼 추후의 과제로 남겨 놓았다.

본 연구결과가 가격정책이나 기금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하며 아무쪼록 본 연구결과가 정책담당자는 물론 연구자와 수산물유통관계자에게도 유용한 자료로서 도움이 되기 바란다.

1998년 12월

韓國海洋水産開發院

院長 洪承湧

第1章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和 目的

수산물 유통부문에 지원되는 정부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예산은 그 총액면에서 규모가 한정되어 있고 수산부문 지원규모는 경합되는 다른 부처의 비목들과의 경쟁을 통해 확정되므로 정부회계에 의해 지원되는 부분은 매년 변동하기 쉽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금은 정부의 통합재정에는 포함되나 정부회계와는 별도로 운영이 가능하여 특별한 목적에 일정한 재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중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기금이다.

수산부문 가격안정과 유통구조개선에 지원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률에 의해 설치된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은 1997년말 현재 2조 87억원이 조성되어 있다. 이 중 1998년 지원예정인 금액은 3,779억원으로 총규모 1조 9,200억원의 19.7%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농안기금 자금조달과 운용 및 운용계획 변경 등 주요사항은 기금관리주체인 농림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수산부문 사업지원기관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수산부문 농안기금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변화와 소비자 기호의 변화로 수산물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산자원의 어획이나 양식에 의존하는 공급은 수산업 내외적 환경변화에 의해 변동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수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의 문제는 수산정책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또한 수산물 가격의 문제는 생산자의 가격지지와 소비자 물가안정이라는 목적외에 가격이 가지는 고유의 기능인 자원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중인 경제구조의 전면적인 개혁중 재정지출개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기금제도의

개혁 등이 포함되어 있고, 농림수산분야의 투자에도 효율성을 강조, 예외없는 경제논리의 적용이 예상되는 만큼 내실있는 기금운영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수산부문 농안기금 운영에 대한 연구, 가격안정정책에 대한 연구는 모두 미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산부문 농안기금의 운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본 연구는 수산물 유통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수산부문 운용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수산부문 농안기금 지원사업에는 정부비축사업, 민간수매지원사업, 생산자단체 출하조절사업, 산지·소비자유통개선사업 등이 있다. 이 중 기금의 실제집행과 관련된 부분을 떠나 기금의 운용만을 연구하는 것은 추상적인 연구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수매비축사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 이유로 정부비축사업은 정부가 가격안정사업 중의 일부로 생산자 및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사업의 성과가 가격을 통해 나타나므로 타부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그러나 정부수매비축제도에 대한 연구는 기금의 운영과 관계되는 부분에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본문에서는 수산물 유통여건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고 수산부문 유통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이는 기금운영을 통한 정부개입의 향후 방향이나 목적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이다. 현재까지의 농안기금 및 수산부문 농안기금의 운용현황과 수산부문 운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기금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사업의 시행 및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금운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정부비축사업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추가하였다. 특히 기금의 운용상 개선방안으로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선택가능한 기금의 형태별

로 간략한 요지와 재원조달이나 기금유지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농안기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수매비축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제안이나 구체적인 가격정책의 목표의 제시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농안사업의 전반적인 검토와 추후 가격안정정책방향과 실천가능한 대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先行研究의 檢討

농안기금의 운용에 관한 연구로는 정복조, 한두봉 외(1994)에 의한 「농안기금 운용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후생측정을 통해 농안기금의 가격안정사업의 효과를 계측하고자 하였고, 농산물 수입개방 등 농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농안기금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대상이 농산물에 국한하고 있고, 농안기금 운영의 개선방안에서도 농안기금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 정부의 농수산물 정책자금의 운영이나 금융제도에 대한 연구¹⁾와 정부의 농산물 수매비축사업을 비롯한 가격안정정책에 대한 연구²⁾가 있다. 수산부문 가격안정사업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주우일, 최수철(1979)의 「연근해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지지정책에 관한 소고」가 있다. 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특이성 관점에서 여러가지 가격안정정책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1) 농림수산물정책자금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서종혁 외(199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수산물 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김정호 외(199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이후 효율적인 농업자금 지원체계 개선방안」, 등이 있고, 금융에 관한 연구로는 정상진(1996, 수산경제연구원), 「금융산업 개편과 수산업 금융의 발전방향」, 김용택 외(19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있음.

2) 하현철·허신행, 「주요 농산물의 수매비축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第2章 水産物 流通의 與件變化와 政策方向

수산물 유통의 여건변화를 살피기에 앞서 우선 수산물과 관련된 특성과 기타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가격정책의 방향에 대해 간략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수산물 생산측면에 있어서는 경쟁적인 다수의 생산자가 재산권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자원을 획득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측면에서는 다수의 소비자가 소량으로 소비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산권의 불명확성은 자원의 시점간 최적배분상태를 불가능하게 하여 남획과 고갈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수산자원과 같은 재생자원의 자원스톡은 그것의 번식능력에 좌우되고, 자원스톡의 저하는 생산가능량의 감소와 어획능력의 증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생산비용의 증가로 연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효율적 자원배분과 시장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는 자원스톡에 대한 자세한 조사연구와 분석을 통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원의 최적배분에 대한 정책목표의 수립이 어렵다. 또한 경제주체의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자원조건하에서 개인적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더구나 자원스톡의 상태는 생물자원의 특성상 자유로운 이동성, 자연환경(수온과 해류 등)에 의해 서식처와 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스톡상태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까지 증가한다. 연근해에서는 해류의 영향으로 어종 출현에 계절성이 존재하여 성출하기때 초단기(시장기)에는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으로 되어 생산자의 가격교섭력이 취약해져 가격결정력이 수요측에 치우치게 된다. 그리고 수산물의 식용부분은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활어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부패와 변질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냉동, 냉장, 임가공 등)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양륙지에서 소비지까지의 공간적으로 괴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소비자까지 도달하는 시간적 괴리도 발생한다. 반면 소비단계에서는 선도가 높을수록 상품가치가 높게 평가되므로 수산물 유통의 중요도는 증가하게 된다.

수산물이 가지는 이화학적인 특성에 따라 수산물 유통에는 특별한 유통시

설을 필요로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물적 유통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유통의 최종단계인 소매단계에서는 떨어품(선도가 떨어지는 상품)과 미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판매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먼저 파는 상품에 그 부담을 전가하여 비교적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 이에 따라 소매단계의 유통마진(특히 유통이윤)이 높아지게 된다.

연근해 수산물은 얼마전까지 산지수협 위판장에 강제 상장토록 하였으나 1997년 9월 1일로 이러한 강제조항이 전면 해제되었고, 원양, 수입수산물도 자율판매되고 있다. 소비지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는 농안법에 따라 수탁·상장·경매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소매거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특별한 규제나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1. 水産物 流通與件 變化

수산물 유통여건의 변화는 크게 수산업 내적인 여건의 변화와 수산업 외적 여건변화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산업 내적 여건의 변화는 국내의 수산업 자체의 변화에 다른 수산물 유통의 여건의 변화로 주로 생산과 관련된 여건의 변화이다. 수산업 외적 여건의 변화는 수산업과 연관된 비수산업부문의 변화이다.

우선 수산업 내적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급에 있어 생산은 1960년대 수산물 자급시대, 1970년대의 수출 개시시대, 1980년대의 수입 개시시대를 거쳐 1990년대에 들어 생산정체 상태에 와 있다. 여기에 1997년 수산물 수입자유화를 통해 수산물의 공급조건은 국내 생산과 함께 외국의 수산업 생산의 불확실성과 수입과 관련된 통상관련 변수들(환율, 무역관련제도 등)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수산업 공급측면의 변화는 수입을 통한 안정적 수산물 수급을 가능하게 하여 기복을 적게 하고, 국내 연근해 자원의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는 낙관적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국내 수산업 생산기반을 위협하여 어민과 어촌의 분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가능하게 한다.

수산물 소비동향을 살펴보면, 수산물의 소비형태는 단순히 선어를 조리하여 부식으로 이용하는 소비행태에서 즉석·편리·고차가공품 형태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수산물 반가공, 즉석조리용 가공식품은 조리방법에 익숙지 않고, 다양한 기호를 가진 젊은 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장기적으로 수산가공품위주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수산물 가공형태가 아직 다양하지 않은 현재로서는 소비자의 수산물가공형태 선호가 정확히 파악되고, 적당한 처리기술이 개발된다면 잠재적 수산물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수산업 외적 여건의 변화는 수산업 내적 여건의 변화보다 파급효과가 크고, 통제가 어려워, 사실상 이러한 외적 여건의 변화가 수산업부문의 지위나 역할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IMF관리체제가 그러하다. 즉 수산업의 생산과 유통소비와 관련되는 부문의 생산요소의 공급과 수산물 시장의 수요는 비수산업 부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므로 외부적 환경에 민감하다.

우리 경제는 1997년 후반 IMF 관리체제로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국내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실질소득이 반 이상 줄어 가계소비가 극도로 위축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상태는 과거의 경제가 거품상태였던 것으로 가정하고 현재 외부충격에 의한 반응으로 안정성을 찾아가는 조정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산물의 소비와 수요에 대한 전망도 과거 자료의 추세를 이용하지 않고 IMF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전망을 토대로 이끌어가고자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및 상반기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중 소득이 증가한 계층은 상위 5분위 계층이 유일하며 나머지 계층은 소득이 5.5~14.9%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소득이 증가한 상위 5분위 계층은 소비지출을 10.4%나 줄여 소득이 감소한 계층의 -7.1~-9.0%에 달하는 소비지출 감소율보다 더 큰 폭으로 지출을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998년 1/4분기 사상 처음으로 명목소득이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하였고 2/4분기에는 5.3%나 급감하였다.

이러한 소득과 소비지출의 감소는 식료품의 소비지출 역시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98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중 식료품비는 340,200원으로 조사되어 전년동기대비 16.1% 감소를 나타냈다. 1975년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이던 외식비도 1998년 1/4분기에 처음으로 24.3% 감소하였

고, 2/4분기에서 29.0% 감소하였다.

앞서와 같은 사회경제적 통계조사자료로 비추어 볼 때 수산물 수요와 소비의 증가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역에 있어서는 환율폭동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어 신용장 개설이 어려워지고, 국내경기침체와 내수감소가 예상되므로 수산물 수출입은 물론 무역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산물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반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수입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수산물 수출도 환율불안과 신용악화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원양 입어료와 원유가, 기타 생산요소의 가격이 폭등할 경우 국내 수산물생산 감소로 이어져 수입수요가 촉진될 가능성도 있다. 수출에 있어서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단가 하락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나 아시아 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원화절상의 장점이 퇴색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의 경기침체도 수출증대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산물의 무역수지 악화가 예상된다.

<표 II-1> 1998년 상반기 도시전가구 및 근로자가구의 가계지출

단위: 천원, %

구 분	전 가 구				근로자가구	
	1997년 상반기		1998년 상반기		1998년 상반기	
	금 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금 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A)	금 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B)
가 계 지 출	1,704.0	7.0	1,516.1	△11.0	1,542.6	△8.8
소 비 지 출	1,497.2	5.9	1,305.7	△12.8	1,289.9	△10.9
식 료 품	410.7	6.3	343.1	△16.5	33.4	△16.5
(외식비)	154.2	16.7	118.4	△23.2	115.9	△26.2
비소비지출	206.7	15.8	210.4	1.8	234.8	4.7

자료: 통계청, 「1998년 2/4분기 및 상반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 1998. 9.

또한 유통업계에 있어서도 가계소득의 감소로 서비스를 주무기로 하는 백화점이나 외식업체의 성장은 둔화되는 반면 저가위주의 정책으로 경쟁하고 있는 할인업체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소매유통은 할인점을

중심으로 저가격을 보장하는 소매유통업체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형 할인점의 활성화 추세에 따라 수산물 비계통유통거래가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산지수협의 위판기능 및 소비지 도매시장 집하, 분산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유통업체들은 소매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산지직거래를 확대하여 유통과정을 축소, 마진을 줄이고자 할 것이고 생산자 조직에 대해서도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과잉경쟁으로 유통업체가 도산되는 경우 관련된 생산자 조직에게도 피해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수집·분산기능을 담당하는 수집상, 중도매인 등에 의해 중간유통마진이 발생하였으나 소매유통업체로 시장지배력이 이동함으로써 기존의 중소 수집상, 중도매인 등에 의한 유통마진 발생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생산자단체에 의해 시장교섭력을 제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결정은 유통업체들이 제시하는 가격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외국유통업체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정보에 의해 상품에 대한 정보와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수입상품비중이 증가한다면 국내 생산기반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관련해서는 환경자원과 수산자원의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보전 및 자원보호와 관련된 규제가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주겠지만 이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2. 水産物 價格安定政策 目標의 檢討

이러한 수산업 및 수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수산업부문과 비수산업부문의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입안과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다양해진 정책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어려움 외에도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정책입안자가 적절한 정책수단을 설계·집행하고 이를 감시해 나가는 데 큰 어려움을 준다.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가격을 관리하는 정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농림광업을 비롯한 수산업과 같이 자원이용과 관련된 정책의 경우에는 가격정책의 방향에 의해 효과가 경제계는 물론 주변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지금처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수산정책 시행에 수반되는 많은 예산과 재원을 확보·집행하

는 경우 비수산부문에 속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설득력 있는 정책의 운용과 성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과 연결되며, 차후 사업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예측불허의 경제환경하에서 정부정책은 향후 경제회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정부사업은 고용촉진과 부의 재분배에 영향을 미쳐 국민경제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의 입안을 위해서는 현실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결과는 과거의 장미빛 미래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경제변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황변화를 감안한 정책연구가 필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집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가격정책의 대상이 되는 가격에 대한 검토로 그 논의를 시작해 보자.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격은 시장정보를 포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signal)의 역할을 한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시장참여자에게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의 역할은 공정한 가격결정을 통해 형성될 때만 가능하다. 가격형성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한다면 가격이 지닌 시장정보가 왜곡전달되므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방해한다. 따라서 시장과 관련된 정책에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책은 가격정책이다. 이때 가격의 정책적 성격을 가격수준과 가격변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의 수준은 가격의 높고 낮음을 의미한다. 너무 높은(낮은) 가격은 가격수취자에게는 유리(불리)할 수 있으나 가격지불자에게는 불리(유리)하다. 따라서 가격은 지불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적절한 가격이어야 한다. 따라서 적정가격은 생산자의 측면에서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생산자수취가격, 유통업자에게는 적정마진이 보장되는 가격, 소비자에게는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가격일 것이다. 이러한 가격은 지불자와 수취자간의 대등한 거래교섭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을 충족하는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거래교섭력도 상품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적정가격이 결정되기 어렵고, 기타 시장왜곡 요인들

에 의해 시장은 이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므로 현실에서는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적정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정부개입을 통해 이루어지곤 한다.

가격의 변동성은 곧 가격의 분산(variance)이고 이를 작게 하는 안정화 정책을 필요로 한다. 가격의 분산은 가격결정시 변화하는 조건이나 정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건들에는 수급량은 물론 수요·공급과 관련된 여러 환경들이 포함된다. 편차를 심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수급량의 예측치 못한 변화, 시장참여자의 기대가격, 기타 외생적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이 포함된다. 가격안정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경제주체로 하여금 의사결정상의 불확실성을 줄여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므로 큰 가격편차를 유도하는 요인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적정가격에서 결정되기 위해서는 유통의 상적(商的)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 정보의 교류를 원활히 하는 등의 지원정책이 사용될 수 있다. 가격안정정책에는 가격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이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 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격안정정책은 농수산물분야의 생산지와 소비지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농수산물분야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가격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1차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강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정책의 목표인 가격안정목표가 실현되었다 해도 자원배분이라는 가격의 역할에 의해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말미암아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이러한 자원배분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다른 정책의 효과를 일부 상쇄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¹⁾ 즉 가격정책은 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수산부문뿐만 아니라 비수산업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수산물 생산의 터전인 자연환경계와도 연관된다. 소비부문은 비수산부문의 소득이 생산물과

1) 예를 들어 생산의 측면에 있어서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든가, 자원의 지속가능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소비의 측면에서도 상품의 상대가격비에 영향을 미쳐 왜곡된 의사결정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임.

의 화폐적 교환을 통해 재분배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수산물 가격정책은 수산물 유통산업부문(가공부문 포함)뿐 아니라 비수산업부문에 그 효과가 파급되는 것이다. 또한 수산물 가격은 자원의 이용을 촉진하여 자연환경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수산물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격정책에서 수산물 시장과 연계되는 국내외 시장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수산물 가격정책은 가격관리라는 부분적 목적 외에 타부문과의 연계성 차원에서의 가격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정책의 주요 목표를 재검토하는 것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농안기금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第3章 水産物 流通關聯 基金의 現況과 課題

1.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은 수산부문의 가격안정정책에 이용되는 유일한 기금 형태의 재원으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 제44조에 의해 설치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농안기금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시설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원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농안기금의 운용기관은 농림부 장관이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비축사업 등을 위탁한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농안기금의 법적 근거인 농안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농산물가격유지법(제정 1961년 6월)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은 재원이 부족하여 법의 설치목적 달 성하기 어려웠다. 이에 가격안정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재정운영의 탄 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1966년 8월 제정하고 이 법에 의해 정부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외로 가격안정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해 1968년부터 정부출연금에 의해 재원이 조성되어 기금이 운 영되어 왔고, 1970년 8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으로 개칭되었다. 그후 1976 년 12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을 통합하였다. 이를 통해 i) 성출하기 농수산물의 출하조절 및 수매비축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정부비축사업과 민간수매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가 격안정과 생산자보호를 꾀하며, ii)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농수협공(위)판장과 도매시장에 대한 출하촉진자금 및 유통시설자금을 지원하여 도매시장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또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 실시요강(농림수산부훈령 제 539호)을 제정·시행하여 종래 사업주관부서의 산발적 사업지침을 통합함으 로써 기금의 목적사업수행에 일관성을 부여하였다. 농안법은 현재 개정예고 중에 있다.¹⁾

2. 水産部門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의 運用과 問題點

1) 水産부분 農安기금의 運用

수산물 유통에 있어 수급안정과 가격안정, 유통시설 근대화를 위해 지원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유일하게 기금에서 지원, 운용된다.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농안기금의 운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가격안정사업으로서 정부가격안정사업과 민간가격안정사업이 있다. 정부가격안정사업은 정부 또는 정부위촉기관(수협,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이 주체가 되어 실시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정부비축사업, 정부출하조정사업, 생산·출하약정사업, 생산장려 등이 있다. 이외에도 농안기금은 생산출하조정, 수출촉진, 농수산물 보관관리 및 가공, 도매시장과 공판장예의 출하촉진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 사업관리, 손실보전, 유통시설의 설치와 취득관리, 가공·포장 및 저장기술과 규격화 촉진,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기타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운용되고 있다.

가격안정사업은 수급의 원활한 조절을 통해 생산자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매품목을 선정, 비축·방출하고 국내생산량만으로는 공급의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과 공동 합작사업을 통해 수입하여 조달한다. 이 중 수산부문에서 특별관리되는 품목은 조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김, 마른 미역 등으로 이들에 대한 수급상황을 특별관리하고 연중 물가관리 비상체제를 운영하고 성수기에는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출하조정사업은 저장성이 없는 품목을 수매하여 판매하거나 수출, 기증, 폐기하는 것이다.

민간가격안정사업은 농안기금의 용자 또는 지원을 받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사업이다. 주요사업은 민간비축수매지원사업, 수출수매지원사업,

1) 농안기금과 관련된 조항의 개정사항에는 기금설치 목적 중 유통근대화를 유통구조개선으로 바꾸고, 기금조성내역 중 결산상 잉여금을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전환하여 기금회계기관의 이사를 임원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음. 이외에도 소비지시장 거래제도 및 기타 유통조성기능에 대한 조항도 개정예정임.

생산자(단체) 출하조절지원 등이다. 민간수매지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가격 안정을 위해 성어기때 수매하여 저장 혹은 가공하여 자율판매하거나 수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협중앙회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사업책임기관으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산지유통개선사업에는 산지단계에서의 규격출하와 공동수집 출하사업을 지원하여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협중앙회가 사업책임기관이 된다. 소비지 유통개선사업으로는 수협 위(공)판장 출하촉진사업, 산지수집상 출하촉진사업, 도매시장 출하촉진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2) 운영상의 문제점

(1) 가격안정사업 실시상의 문제점

가격안정사업부문은 가장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생산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가격안정사업 중의 하나인 정부수매 비축사업은 수매와 방출시기를 물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시장개입 시기 결정은 가격수준도 부수적으로 고려되지만 개입시기를 성어기와 단경기로 구분하여 개입시기가 결정된다. 이는 다분히 물량중심으로 개입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성어기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산지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생산자수취가격 안정을 위해 개입하여 수매하고 단경기에 소비지의 초과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한 비축분 방출은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소비자가격의 안정을 위해 방출하는 경우에는 물량중심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출시 직배, 직판을 제외하고는 중간상인의 폭리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즉, 방출시 도매시장을 통하는 경우 중간상인이 경매를 통해 일부러 낮은 가격으로 경락시키고, 소매단계에 다시 비싼 가격으로 되판다면, 물량방출이 곧 가격안정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가격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리고 정부비축을 위한 재원의 한계로 비축가능량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민간보유량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물량을 중심으로 정책을 운용하는 경우 민간에서 정부비축분 방출의 효과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가격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정부는 민간보유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반면 민간은 정부의 수매 비축량 또는 수매비축가능량을 정부고시나 언론보도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정부의 방출한계량을 파악,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꾸밀 수 있다. 또한 정부재원의 한계와 다양한 수산물 품목의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부품목 중심의 수매비축정책은 가격안정실현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격안정사업의 민간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민간보유량과 민간재고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정부와 민간사이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자칫 정부개입이 시장을 교란하여 민간유통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마저 있다.

또한 정부수매정책효과의 분석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물량위주의 가격정책에서는 수매방출량 측정은 가능하지만, 수매방출에 따른 가격변화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 만일 시장가격변동과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정부의 시장개입 의사결정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는 자칫 정부실패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산물의 가격이 물가나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가 부족하고, 가격의 변화가 어떠한 경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기본적 자료가 부족하여 가격안정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반영할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다. 즉 수산물 가격의 변동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가격안정사업에 의해 가격이 안정화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책의 방향 설정과 추진이 어렵다.

(2) 운용상의 문제점

수산부문 농안기금의 운용면에 있어서 1997년 현재 당기순이익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기순이익 2,101억원 중 비축사업을 통한 비축손익이 1,734억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3,094억원, 기타수입 1,802억원, 경상사업비 등이 -3,080억원이다. 이 중 비축사업의 이익 1,734억원 중 수매(농산물, 수산물)에 따른 손실은 170억원, 수입수산물에서 발생한 손실이 12억원인 데 반해 수입농산물로부터는 약 1,925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수매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농수산물 수입사업을 통해 보전되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에서

는 누계면에서 수매수산물에 의한 손실은 -1,018억원, 수입수산물에 의한 이익발생 누계는 16억원으로 순손익은 약 손실 1,002억원 정도이다. 수산물의 경우 수입에 의해 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매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산물은 선어를 수매하여 냉동상태로 보관하기 때문에 방출단계에서는 냉동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차액에 의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의 발생은 불가피하나 농안기금의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익원이 필요하다. 현재 주로 흑자를 내어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것은 농수산물 수입 수매방출에 따른 이익이나 농산물 수입이익금 중 일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금의 발생도 국내시장의 상황은 물론 국제시장의 농수산물 수급상황과 수출입국의 선호도 변화, 환율, 검사검역상의 문제 등에 의해 수익발생여부가 불확실하다.

수산부문 농안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해양수산부 발족 이후 수산부문이 농림수산부에서 떨어져 나오게 됨에 따라 수산정책사업이 대부분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으나 농안법에서는 농안기금의 운용주체는 농림부이고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산림청과 같은 사업지원기관으로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안사업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확정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단지 사업실시기관과 운용기관사이에 존재하여 사업확정전에 사업검토 수준만 참여하고 있어 정부사업 자체가 객관성과 합법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의 계획을 입안하여 실천하는 데에도 시차가 존재하며 중앙부처 두 개를 거쳐 실시되는 것은 비효율적인 운영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원액이 전체 사업비의 19.4%에 지나지 않아 물량조절에 한계가 있고 이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가 의문시된다. 또 농안기금 10개 사업중 현재 지원되는 부문은 4개 사업부문이다. 간접적 수급조절사업(출하조정, 생산출하약정사업, 유통조성사업)에 대한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어 단기적 정책효과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표 Ⅲ-1>

당기순이익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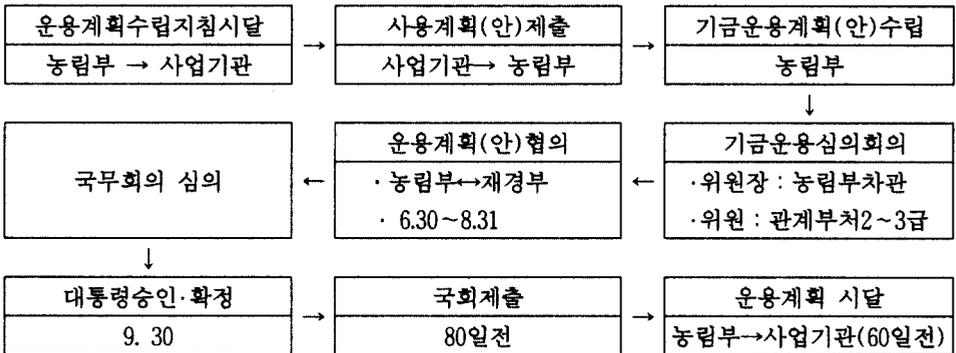
단위 : 억원

	1995	1996	1997	누계
비축사업손익	2,514	1,969	1,734	15,516
- 수매농산물	-59	-299	-12	-3,953
- 수매수산물	-159	-252	-158	-1,018
- 수입농산물	2,731	2,515	1,925	20,472
- 수입수산물	1	5	-12	16
용자금 이자수입	281	396	499	3,094
기타수입	123	172	240	1,802
경상사업비 등	-534	-384	-381	-3,080
합 계	2,384	2,153	2,101	17,332

자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안기금사업관리업무편람」, 1998.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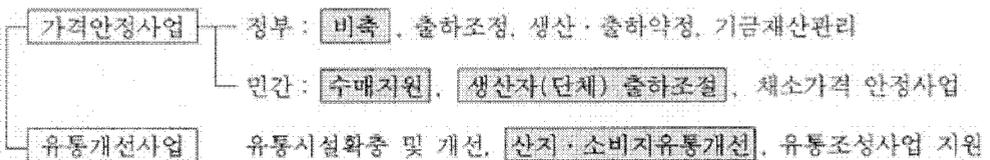
<그림 Ⅲ-1>

농안기금 운용계획 수립절차



<그림 Ⅲ-2>

농안기금 지원 사업내역



주 : 음영부분은 수산부문 농안기금 지원 사업내역

第 4 章 水産物の 價格과 物價變動性的 分析

수산물 가격의 안정에 관한 연구와 정책수립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수산물 가격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정책목표로서 가격이 가지는 성질은 다양하다. 본 장에서는 가격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가격의 변동성과 그것이 다른 부문의 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1. 分析의 意義

수산물은 농산물과 더불어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항목중의 하나로 지목받아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수매비축사업을 비롯한 기타 농안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러 사업중에서도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수매비축사업은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적자의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정작 가격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매비축사업은 수매물량과 방출물량 통계로만 그 실시결과가 공표되고 있고, 정부는 가격안정정책을 물량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성출하기에 일정물량을 수매하였다가 단경기때 방출하는 것이다. 물론 성출하기에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단경기때는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정책결정자는 이러한 과잉공급상태와 공급부족상태를 물량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안정사업의 효과가 평가되기 어렵다. 다만 이를 위해 어떤 정책이 이용되었고, 그 실적이 어느 정도라는 것만 파악이 가능한 수준이다.

가격안정정책효과를 측정,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정책목표로서의 가격의 성격은 가격의 수준과 가격의 변동성으로 기본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¹⁾ 가격수준은

1) Streeten(1987)에 따르면 가격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수준(level), 구조(structure),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미시적으로는 수산부문에 의해 영향을 받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금융, 재정정책 및 무역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가격의 변동성은 가격안정성(stability)과 관련이 있는데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이가 크지 않고 가격이 외생적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매비축정책은 수매나 방출에 의해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지지하는 것임과 동시에 어느 쪽 이상으로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것을 막아 가격의 변동폭을 작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생산자에게 주어지는 최저가격(floor price paid to producer)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고가격(ceiling price paid by consumer)의 적당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²⁾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로는 생산자수취가격과 소비자 지불가격을 파악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더불어 이를 지수화하여 수산부문과 비수산부문과의 교역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³⁾ 그러나 수산물과 관련된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효과성(effectiveness), 안정성(stability)임.

2) Streeten, P. *What Price Food?*, Cornell Univ. Press, 1987, p.48.

3)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는 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과 농가가 영농 및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재화나 용역의 구입가격을 매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작성함. 이 조사는 농산물 판매가격의 계절적인 변동과 장기추세를 파악하고 농산물의 균형가격을 산출하는 지표가 되는 농가패리티지수(parity index)를 작성하며, 아울러 농촌경제의 움직임을 가격면에서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경제동향분석 및 농업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됨. 조사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월 1회 실시하며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은 매월 5일, 15일, 25일을 기준으로 월 3회 조사하며 전국 135개 군에서 5일시장의 전장과 후장일에 농협 군지부 조사원이 직접 조사지역에 나가 가격을 조사함. 농산물의 생산은 대부분 자연조건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기간이 수개월로 한정되거나 연중 계속된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계절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로 인한 월별 가격변동의 동향이 심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따라서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에서는 이와 같은 농산물거래의 계절성을 지수에 반영하기 위하여 농가판매가격의 연평균지수 작성시 월별 거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음. 즉, 농산물의 월별 거래 가중치로 개별품목의 월별가격을 가중평균하여 연평균 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연평균지수를 작성하고 있음. 농가판매가격은 곡물, 청과물 및 축산

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중 수산물과 관련된 수산식품이나 어개류 등의 지수이다.

참고로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시장의 제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상호간에 거래되는 모든 재화 및 재화와 성격이 유사한 일부 서비스의 가격수준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한국은행에서 생산자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고 있다. 생산자물가조사는 서울을 포함한 16개 시 지역에서 가격자료가 수집되고 있으며, 조사대상품목별로 대량생산지 또는 집산지를 중심으로 가격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가격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급적 조사대상품목별로 거래비중이 크고 가격변동의 대표성이 있는 3개 내외의 조사대상처를 선정하고 농수산물의 경우 각 지역의 조사대상처에서 품목별로 조사된 가격을 평균하여 당해지역의 평균가격으로 하며 지역별 가격을 단순 산술평균함으로써 전국평균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가격조사는 농축수산물과 공산품 모두 매월 5일, 15일, 25일을 기준으로 월 3회 실시하고 3개 시점의 평균가격을 월평균가격으로 한다. 가격자료는 고정조사대상처에 대하여 직접방문, 전화 및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일 현재 지정된 품질규격상품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업체 및 조합과 구입자 등으로부터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구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게 위하여 구입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품목수 509개)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는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조사는 전국 36개 도시중 도시별로 2~11개의 대표적인 시장에서 7,800여개 소매점포 및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일반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조사와 약 3,500여개 임대가구를 대상으로 집세 등을 조사하는데 그 달의 가격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5

물 등 농가가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하는 1차거래 단계에서, 농가구입가격은 가정용품, 농업용품 및 농촌임료금 등 농가가 영업 및 가계를 위해서 구입하는 가격과 임료금을 소매단계에서 조사함. 지수편제시 품목선정은 농가경제조사의 지역별 농가수입 및 지출의 1/10,000 이상의 품목(농가판매가격 지수품목 69개, 농가구입가격 지수품목 306개)을 택하고 가중치 모집단은 농가의 평균 현금수입 및 지출총액을 사용함. 농가판매가격의 경우 농가가 생산한 모든 농산물의 현금 판매수입, 농가구입가격은 농가가 영농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역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현금 총액임.

일, 14일, 23일이 포함된 주의 수, 목, 금요일 중 1일을 조사일로 정하여 월 3회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균한 값을 월평균가격으로 사용한다.⁴⁾

본 분석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물가지수로서 이 지수가 소비자 지불가격 자체는 아니나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지수화한 것이고, 물가상승률이 물가지수에 의해 계산되므로 분석상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또한 가격자료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지수화한 형태가 적합하고, 각각의 수산물의 가격을 이용하는 경우 비교대상이 되어야 하는 비수산물의 가격이 필요한데, 어떤 품목가격을 이용할지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수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러므로 본 분석에서는 물가지수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수산물을 포함한 식료품 물가지수와 식료품이외의 물가지수의 움직임과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계열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연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산물이나 식료품의 가격이 물가상승을 선도하고 있는지와 수산물을 비롯한 식료품 물가의 변화가 식료품 이외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얼마나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가격안정과 물가안정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유도하고자 한다.

2. 關聯研究의 檢討

유윤하, 성명기(1996)의 연구는 소비자 물가변동의 분포를 통해 어떤 품목의 가격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가격변동이 신축적인가 경직적인가를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농수축산물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고영근, 설광언(1996)의 연구에서는 농산물의 가격이 물가상승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지적하여 반박하고 있다. 이영훈(1995)의 연구에서는 1976년에서 1994년까지의 각 산업별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는가를 나타내는 기여도의 개념을 이용하여 각 산업별 기여도의 추이를 기간별로 살펴보고, 소비자물가와 의 상관관계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농수축산업 물가의 움직임과 타산업 물가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유도하였고, 연구자가 나눈 기간중 제3

4) 통계청, 「주요통계지표 해설」, 1998.

기에 해당하는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전체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농축수산업 물가와 서비스업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안정과 불안이 농축수산업과 서비스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 원인을 거시지표관리와의 관계에서 찾고자 하였다.

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검토한 논문으로는 박우규(1996)의 연구가 있다. 이는 공공요금의 상승이 실제로 다른 부문의 물가를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유도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요금의 인상은 이외의 물가를 상승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부문의 물가상승이 공공요금부문의 물가상승을 유도했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3. 資料의 性質

본 분석에서는 물가지수를 수산물(FPI_F), 수산물을 제외한 식료품(FPI_NF)과 식료품이외(NFPI)의 물가지수의 변동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통계청에서도 상품특성에 따라 농수축산물과 그 이외의 물가지수로 나누어 조사되기 시작한지가 얼마되지 않아 가용한 자료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 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1975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1995년=100)를 인용분석하기로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우선 계열에 대한 정상성(定常性, stationary) 검정을 통해 단위근(unit root)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정하였다. 이때 계열의 오차항에 자기상관이 있는 것을 가정하여 ADF(Augmented Dickey-Fuller)검정법을 이용하였다.⁵⁾ 만일 계열이 정상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VAR(Vector Autoregressive)모형을 통한 분석을 기본적으로 이용한다. 이와 반대로 단위근을 가지는 경우 계열이 불안정(non-stationary)하다고 한다. 단위근을 가질 때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우선 예측(forecasting)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허구적 회귀(spurious regression)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차분을 하여 안정적으로 만든 후 VAR모형을 이용해 분석할 수 있다. 이때 계열간에 공통적 확률추세(common stochastic trends)를 갖는 경우 계열간의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감안하여 분석해야 하는데 이러한 계열간의 관계를 감안하여 분석하는 모형이

5) 검정통계량은 추정에 사용된 EViews 3.1에서 제공되는 값을 이용하였음.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 ECM)한다.⁶⁾ 이를 위해 불안정한 시계열간의 공적분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존재한다면 오차수정항(Error Correct Term)이 몇 개나 존재하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적분 검정이 이용되고 대표적인 것이 요한센(Johansen) 검정법이다. 이는 랭크(rank)의 수를 제약(restriction)으로 주고, 우도비율검정(LR Test)을 통해 검정한다.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우선 지수를 수산물, 식료품 물가지수, 식료품이외의 물가지수로 나누고 각각 FPI_F, FPI_NF, NFPI로 표시하였다.⁷⁾ 자료분석의 절차는 계열이 안정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때 두 계열 모두에서 단위근이 나오면 요한센공적분검정(Johansen Cointegration Test)을 통해 공적분검정(Cointegration Test)을 실시하여 공적분관계(cointegration relationship)와 공적분벡터의 수(number of cointegrating vector)를 알아보았다. 두 계열이 공적분 관계가 없다면 단순 VAR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관계가 있다면 오차수정모형(ECM)을 이용한다. 계열의 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지수들의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식료품부문에 수산물의 물가지수는 level에서는 약 30.31, 1차차분에서는 1.085, 2차차분한 결과에서는 1.468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수산물을 제외한 식료품물가지수는 level에서는 25.66, 1차차분한 것은 0.745, 2차차분한 것은 0.910으로 나타났다. 비식료품 물가지수는 level에서는 25.54, 1차차분에서는 0.339, 2차차분에서는 0.378로 식료품부문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준편차로 보면 식료품부문이 비식료품 부문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식료품 부문 중에서도 수산물의 물가지수의 변동이 수산물을 제외한 식료품의 물가지수 변동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 6) 오차수정(error correction)이라는 것은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에는 장기균형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차가 발생하게 되지만 곧 이를 수정하여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정됨을 의미하고, 이러한 장기조정과정을 모형에 감안하는 것이 오차수정모형임.
 - 7) 통계청은 식료품과 비식료품으로 나누어 각각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음. 이 중 수산물은 식료품의 물가지수 계산에 포함되어 있음.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가중치로부터 역산하여 얻어냄.

〈표 IV - 1〉

계열의 통계적 성질

	FPI_F			FPI_NF			NFPI		
	level	D(1)	D(2)	level	D(1)	D(2)	level	D(1)	D(2)
평균	50.022	0.368	-0.000	58.008	0.338	0.000	60.924	0.343	0.001
중앙값	42.100	0.300	0.100	53.374	0.281	0.036	60.550	0.200	0.000
최대값	104.50	5.300	5.800	105.33	2.800	2.853	107.40	1.900	1.500
최소값	6.200	-4.200	-5.800	15.621	-2.038	-3.614	17.100	-0.200	-1.300
표준편차	30.310	1.085	1.468	25.657	0.745	0.910	25.543	0.339	0.378
왜도	0.354	0.473	-0.355	0.199	0.193	-0.212	-0.049	1.702	0.106
첨도	1.865	6.498	5.662	2.034	4.277	4.371	2.033	6.359	5.067
변이계수	0.606	2.948	-3670	0.442	2.204	2275	0.419	0.9883	378
Jacque-Bera	19.687	143.890	82.881	11.991	19.489	22.461	10.386	250.60	47.141

주 : 정규분포의 조건 : 왜도 = 0, 첨도 = 3, Jacque-Bera $\sim \chi^2(2)$
 표본수 = 264(level), 263(1st difference), 262(2nd difference)

1)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

ADF검정을 통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상이 되는 계열 모두 level에서는 단위근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귀무가설(H_0)은 “단위근이 존재한다”이고 만일 이때 검정통계량(test statistic)의 절대값이 임계치(critical value)의 그것보다 커서 기각이 된다면 이는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계열이 정상적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귀무가설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⁸⁾ 시차수(lag order)는 물가가 1년이전의 물가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12에서부터 점점 줄이면서 추정을 하고, 각 설명변수의 t-통계치 유효성, AIC기준을 활용하여 적정차수를 정하였다. 1차 차분한 경우 모두 단위근(unit root)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I(1)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각 차수에서의 검정결과는 〈표 IV-2〉에 나타나 있다.

8) 엄밀히 이야기하면 단위근이 존재한다고 결론짓는다고보다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보다 통계학적으로 옳은 설명임.

<표 IV - 2>

ADF 검정결과

lag order	FPI_F			FPI_NF			NFPI		
	level	D(1)	D(2)	level	D(1)	D(2)	level	D(1)	D(2)
2	-2.0922*	-9.8131	-15.4598	-1.2620*	-9.4725	-17.2262	-1.962*	-6.651	-15.899
3	-2.0005*	-8.6424	-14.4556	-1.3126*	-7.3543	-14.8694	-1.928*	-6.051	-13.217
4	-1.9695*	-7.2198	-11.5307	-1.4696*	-6.1652	-11.9869	-1.896*	-5.862	-12.212
5	-1.9994*	-7.3368	-11.8290	-1.6089*	-5.9317	-12.5083	-1.881*	-5.424	-11.878
6	-1.8263*	-6.1491	-11.0973	-1.5507*	-4.6872	-11.3404	-1.867*	-4.828	-12.022

- 주 : 1) H_0 = Series has unit root.
- 2) MacKinnon critical values for rejection of hypothesis of a unit root are applied
- 3) * means the acceptance of null hypothesis by 10% criterion

2)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

계열이 level에서 단위근을 가진다는 결론은 얻어 공적분 검정을 위해 요한센 검정(Johansen Cointegration test)을 실시하였다. 이때 단기적으로 오차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장기균형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분석에서는 “식료품의 가격이 비식료품의 물가지수와 어떤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을 도입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만약 공적분관계가 성립한다면 수산물을 비롯한 식료품의 가격의 변화가 비식료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어 특정한 관계로 물가상승을 유도한다는 것이 채택되는 것이다.

가격과 요한센 검정법은 결과는 차수(lag order)에 따라, 오차수정 방정식(error correction equation)의 설정(specification)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때 랭크의 수($0 \leq \text{랭크의 수} \leq \text{계열의 수}$)에 따라 모형이 결정되는데 만일 랭크의 수가 0이면 1차 차분한 것을 가지고 단순 VAR로 추정해야 되고, 랭크의 수가 0보다는 크고 계열의 수보다는 작은 경우, 랭크의 수만큼 오차수정항을 가지는 오차수정모형으로 추정한다. 만일 랭크의 수가 계열의 수와 같다면 계열들을 차분하지 않은 계열(level)로 VAR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공적분검정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났다. 검정결과에 따르면 로그우도값(log likelihood value)와 아카이케정보기준(Akaike Information Criterion)으로부터 선형의 추세를 가지면서 오차수정항에 절편과 추세가 포

합된 것이 적합한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료품과 비식료품의 물가지수간에는 사전적으로 결정된 선형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차수정항이 1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식료품과 수산물을 제외한 식료품 물가지수와 관계 수산물을 제외한 식료품의 물가지수와 수산물의 물가지수와 관계가 성립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 - 3〉

요한센 공적분 검정 결과

Test Assumption	Hypothesized No. of CE	Likelihood ratio	log likelihood value	AIC
No deterministic trend in the data (No intercept or trend)	None	65.57519**	-364.7062	-2.695959
	At most 1	11.46049	-337.6489	-2.887969
	At most 2	0.73362	-332.2854	-2.913743
No deterministic trend in the data (intercept (no trend))	None	80.59187**	-364.7062	-2.695959
	At most 1	20.68319*	-334.7519	-2.907614
	At most 2	3.24583	-326.0332	-2.956544
Linear deterministic trend in the data (intercept (no trend))	None	26.31843	-337.5695	-2.896240
	At most 1	7.72320	-328.2719	-2.952161
	At most 2	0.44409	-324.6323	-2.964724
Linear deterministic trend in the data (intercept and trend)	None	44.31180*	-337.5695	-2.896240
	At most 1	13.34671	-322.0870	-2.997001
	At most 2	3.95265	-317.3899	-3.015113

*(**) denotes rejection of the hypothesis at 5%(1%) significance level

Note) lag order are previously determined to 1 by estimating VAR without CE vector

3) 추정결과

공적분 검정결과에 따라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추정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공적분 벡터의 추정치와 통계치를 보면 수산물을 비롯한 식료품의 물가지수는 비식료품 물가지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특이한 것은 우선 비식료품의 물가지수는 수산물을 제외한 식료품의 물가지수와 추세 등은 정(+)의 관계를 갖는 반면 수산물의 물가지수와 절편항은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표 IV - 4>

오차수정모형 추정결과

Cointegrating equation	Estimates	standard error	t-value
NFPI(-1)	1.00000	-	-
FPI_NF(-1)	-1.235718	0.11934	-10.3546
FPI_F(-1)	0.710140	0.10846	6.54756
Trend	-0.202504	0.03016	-6.71345
C	1.894524	-	-
Error Correction	D(NFPI)	D(FPI_NF)	D(FPI_F)
Co-int eq.	-0.007571 (0.00967) (-0.78309)	0.085194 (0.02168) (3.92884)	-0.089193 (0.03324) (-2.68305)
D(NFPI(-1))	0.366523 (0.05992) (6.11722)	0.236976 (0.13438) (1.76344)	0.127928 (0.20602) (0.62096)
D(FPI_NF(-1))	0.025361 (0.02796) (0.90701)	0.271464 (0.06271) (4.32868)	-0.051281 (0.09614) (-0.53338)
D(FPI_F(-1))	0.032981 (0.01839) (1.79307)	-0.028211 (0.04125) (-0.68386)	0.120303 (0.06324) (1.90222)
C	0.196685 (0.02858) (6.88098)	0.176294 (0.06411) (2.74993)	0.299399 (0.09828) (3.04631)
R-squared	0.162046	0.131827	0.035751
Adj. R-squared	0.148953	0.118262	0.020685
Sum Sq. Resids	25.12249	126.3726	297.0106
S.E. equation	0.313265	0.702597	1.077125
Log Likelihood value	-64.87326	-275.6922	-387.2088
AIC	-2.302443	-0.686972	0.167562
SBC	-2.234157	-0.618686	0.235848
Mean dependent	0.343295	0.339019	0.370498
S.D. dependent	0.339574	0.748232	1.088441

주 : () parenthesis contains standard errors and t-values respectively.

장기적으로는 비식료품의 물가지수를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정속도를 나타내는 추정치를 보면 비식료품의 추정식이 가장 작게 나타나 조정속도가 가장 느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빠른 것은 수산물의 물가지수의 추정식의 그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산물 물가지수는 장기적인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조정이 제일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수산물의 가격이 다른 계열에 비해 가장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각각의 추정식에서 장기균형관계를 제외한 lag 변수의 영향은 추정치의 값과 부호를 통해 알 수 있다. 비식료품가격 변동분($d(NFPI)$)은 다른 물가지수의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1기 이전의 자체변동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의 물가지수 변동분과 수산물을 제외한 물가지수의 변동분과는 역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t-통계치가 낮아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 수산물을 제외한 식료품의 가격변동분은 자체의 영향에 의한 것이 가장 크고, 비식료품물가지수 변동분에 의한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물가지수의 변동분도 비식료품물가지수의 변동분과 자체의 전기 변동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분석의 결과는 <표 IV-5>와 같다. 각 변수의 표준편차 1단위의 충격영향에 대한 반응은 자체 충격의 반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수렴하지만 수산물 물가의 충격에 대한 비식료품 물가지수의 반응만을 제외하고는 그 충격의 효과가 사라져 0에 수렴하지 않고 지속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산물 및 수산물을 제외한 물가지수의 반응에서는 각각의 충격에 대한 반응이 서로 겹치거나 평행을 이루는 것을 보이고 있다.

각각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비식료품의 물가지수의 경우 자체충격에 대한 반응은 약 6기에서부터 44% 정도로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충격에 대한 반응은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산물 물가에 대한 충격은 0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산물을 제외한 식료품의 물가의 충격은 약 8% 정도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을 제외한 물가의 반응은 비식료품 부문의 물가충격에 의해서는 4기 이후 약 30% 정도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의 충격은 2기 이후 그 효과가 감소하여 18기 이후로 접어들면 약 43% 정도의 효과가 지속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수산물 물가의 충격의 반응은 약 10기까지 그 효

과가 계속증가하여 그 효과가 자체의 충격의 그것과 거의 같은 정도로 지속된다.

<표 IV - 5>

충격반응분석

Period (month)	Response of NFPI			Response of FPI_NF			Response of FPI_F		
	NFPI	FPI_NF	FPI_F	NFPI	FPI_NF	FPI_F	NFPI	FPI_NF	FPI_F
1	0.302401	0.000000	0.000000	0.156966	0.673267	0.000000	-0.072170	0.214952	1.040947
6	0.435296	0.058617	0.018731	0.316137	0.575955	0.299625	-0.066395	0.505457	0.863234
12	0.436140	0.070049	0.008163	0.313237	0.452782	0.418152	-0.062877	0.614846	0.758736
18	0.436208	0.071790	0.006511	0.312506	0.433723	0.436245	-0.062232	0.631646	0.742789
24	0.436218	0.072053	0.006261	0.312395	0.430838	0.438983	-0.062133	0.634188	0.740376

수산물 물가의 반응에서는 비식료품부문의 물가충격에 대한 반응은 0보다 작게 나타나고 이러한 것이 지속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불가의 움직임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체충격이나 다른 식료품 부문의 물가충격은 그 효과가 지속되어 자체충격에 대한 반응이 좀더 크게 나타나고 타식료품부문의 물가충격의 반응은 그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둘의 관계가 평행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분산분해분석을 통해 예측오차의 분산을 분해하여 각 가격계열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변동이 대부분 자체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산물이나 수산물 이외의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다른 요인들의 기여도가 처음에는 작다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물을 제외한 식료품부문의 물가지수 자체의 기여는 감소하다가 약 40% 기여도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때 수산물 물가지수의 기여도가 상승하여 비슷한 정도의 기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비식료품 부문의 물가지수의 영향은 약 20% 정도에서 정체되는 것을 나타낸다. 수산물의 물가지수 변동은 자체의 변동성이 기여하는 부분이 다른 것보다 계속 크게 나타나지만 약 60% 정도로 수렴하게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수산물 물가지수의 기여도가 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약 40%의 기여를 하는 것

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식료품부문의 기여도는 매우 작게 나타나 1% 미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 - 6〉

분산분해분석

Period (month)	Variance of NFPI			Variance of FPI_NF			Variance of FPI_F		
	NFPI	FPI_NF	FPI_F	NFPI	FPI_NF	FPI_F	NFPI	FPI_NF	FPI_F
1	100.000	0.0000	0.0000	5.15527	94.8447	0.0000	0.45891	4.07091	95.4702
6	98.6466	1.03796	0.31541	13.4511	80.8747	5.67426	0.41445	12.6763	86.9092
12	98.0988	1.71976	0.18145	16.5775	66.3435	17.0790	0.41842	23.2019	76.3797
18	97.8439	2.02960	0.12652	17.7933	58.3557	23.8509	0.41505	28.8355	70.7494
24	97.7102	2.19085	0.09898	18.4324	53.8321	27.7355	0.41262	31.9891	67.5983
30	97.6303	2.28708	0.08266	18.8273	50.9957	30.1770	0.41105	33.9535	65.6354
36	97.5775	2.35059	0.07191	19.0957	49.0625	31.8417	0.40998	35.2867	64.3033

4. 政策的 含意

본 연구에서 유도할 수 있는 결론으로는 수산물을 비롯한 식료품의 타부문에 대한 물가 파급효과는 비식료품의 그것에 비해 작다는 것이다. 특히 수산물의 타부문의 물가파급효과는 매우 작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식료품의 가격상승이 타부문에 영향을 주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과는 상반된 결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정책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유도하기는 어렵다. 이는 새로운 물가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다 거시경제나 다른 연관부문을 통합할 수 있는 경제구조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수산물의 가격안정대 정책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물가당국이 매년 발표하는 물가정책 목표와 연동하여 최고가격은 수산물 가격의 변화에 따라 타부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상한선과 하한선을 찾는다면 가격안정의 효과와 이를 통한 물가안정 효과라는 정책적 목표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분석은 물가지수 조사대상품목이 수산물 중 일부품목으로 한정

되어 있어 전체 수산물 가격의 변화를 대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자료의 미비로 보다 풍부한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여 시계열자료분석이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대표본성질(Large number property)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해 검정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것과 관련하여 분석대상기간동안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가격관리체제(price policy regime)의 변화를 시간변동에 따른 모수추정(Time-varying Parameter Estimation) 등을 통해 추정하지 않고 다만 가변수(dummy variable)를 통해서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또 충격반응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원래 계열이 안정적인 경우 충격반응분석의 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0에 수렴해야 하는데 충격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의 단위근 검정 등의 결과와 상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계열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⁹⁾

9) Engle, R and B. Sam Yoo, "Cointegrated Economic Time Series : An Overview with New Results," *Long-run Economic Relationships -Readings in Cointegration* edited by Engle, R. F and C. W. J. Granger, Oxford Univ. Press, 1991.

第 5 章 水産部門 農安基金制度의 改善方案

1. 水産部門 農安基金 赤字解消 方案

수산부문 농안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농안기금 운영에 따른 적자해소의 문제이다. 적자부분은 기금의 조성 및 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지속적인 수산부문 농안사업을 위해서 적자를 축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특히 대부분의 적자는 주로 정부비축사업에서 발생하므로 정부비축사업의 운영과 방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개선방안의 기초는 정부의 개입정도는 줄이면서 기존의 가격안정정책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이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정부가 정책의 강도를 낮추는 것뿐 아니라 정부역할을 민간과 나누어 갖음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첫째, 수산물 수입수매 확대와 수입과 연계한 가격안정사업이 가능한 방법일 것이다. 이 방안은 단순히 수매비축사업에서의 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수매가격과 방출가격과의 차이에서 발생된다고 본다면 수매가격을 방출가격보다 낮게 제시하는 방법이다. 농안기금 중 흑자의 대부분이 수입수매를 통한 가격안정사업이었다. 수산물의 경우에서도 수입으로 흑자를 얻었던 경험 이 있다.¹⁾ 그러나 수산물 수입이 확대될 경우 시장반입량이 증가하므로 가격

1) 가격안정용 수산물 수입실적(1994~97)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수입금액은 부대비가 포함된 가격임. 1995~96 마른멸치 수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판매금액이 수입금액보다 많아 이익을 내고 있음.

가격안정용 수산물 수입실적

단위: 백만원

		1994	1995	1995~96	1996	1997
품 목		냉동갈치	냉동갈치	마른멸치	냉동갈치	냉동갈치
실적	수입금액(A)	1,583	2,214	5,267	517	3,214
	판매금액(B)	2,536	2,605	4,514	1,153	5,254
	손 익(B-A)	953	391	-753	636	2,040

하락이 어가소득의 감소나 국내 유통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국내 수산업 생산 및 유통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수입개방화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법인의 수산물 수입이 허가될 경우 수매비축에 따른 가격안정효과와 순수익 증대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외국수산물의 단가가 매우 낮은 경우에만 수입가격과 국내가격간의 차이에 의해 사업수익의 확대를 달성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역환경이나 국내시장환경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업손실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수매비축사업실시의 본질적인 목적중의 하나가 생산지 가격안정임을 고려할 때 소비자 가격안정만을 위해 수입수매만을 고수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것이므로 사업재원의 배분에 있어 적절한 기준이 요구된다. 또 생산의 정체는 수입수산물 반입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물의 시장반입을 감안한 사업의 수행이 요구된다.

둘째로 생산지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자조직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강화하도록 유통개선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기존의 수매비축을 통한 정부주도의 물류조절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이다.²⁾ 정부가 현재와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물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관리하는 방식은 많은 관리비용을 비롯해 사업운영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격안정사업의 목적과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의 개입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역할은 누군가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므로 축소되는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가격안정사업에 있어 생산자 가격안정차원에서는 생산자단체 주도의 수매사업을 비롯한 가격안정사업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생산자(단체)의 수급조절 노력과 병행하여 정부는 생산부문에 대한 수매비축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소비자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소비측면에서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유지

2) 수산물의 가격변화가 극심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생산의 개별의사결정이 완전히 분권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생산량 조절이나 출하조절의 인센티브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임. 특히 어가소득 중 어업소득이 1997년 어가경제통계에 따르면 57.9%에 이르고 있어 어가의 화폐공급이 대부분 어업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생산지어가의 변동이 어가소득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임. 이에 정부는 가격지지 측면에서 성수기때 출하되는 물량을 완충하는 수매비축정책을 실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가 시행하는 수산물의 물류조절기능으로 파악할 수 있음.

할 적정재고량만을 보유하고, 사업의 폭을 적정화하여 비용과 적자발생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일정부분의 역할을 민간과 나누는 시장지향적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조금(自助金) 적립에 대해 지원하고, 수매비축에 소요되는 시설의 개·보수 등 유통기반 조성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제도면에서는 비축에 따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적정가격대를 제시하여 일정정도의 가격진폭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격범위안에서 민간부문이 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수매방출할 수 있는 자율성을 인정한다면 이윤추구 가능성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가격안정의 목적을 일부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이 다수의 개별어민에 의해 이루어져 생산량의 자발적인 통제에 대한 유인이 없으므로 전국적 생산자출하조직 형성을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촉진하여 생산과 공급의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 유인이 조직화의 참가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용고 배당과 같은 경제적 혜택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간접적이지만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생산어민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도 요구된다.³⁾

셋째로는 남북경협차원에서 북한수산물을 가격안정사업 목적으로 반입하고, 과잉생산물을 반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북한 수산업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고, 반입되는 양이 줄고 있는 형편인데다 수산물검사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책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우선 수산부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여 가능한 경우 가공시설 및 냉동시설 지원 등 유통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수산물 반입에 따른 가격변동을 막기 위해 긴급반입제한조치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반입제한조치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가격안정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국내 과잉생산되는 어종을 수매하였다가 북한과 구상무역의 형식으로 교

3) 이러한 방안으로 직접지불제를 이용한 조기은퇴 유도나 생산구조조정으로 어선감축을 유도하여 합리적 경영체 육성을 가속화하는 방법을 통해 어업경영이 효율성을 배가하는 것도 합리적인 제도운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역하는 방법도 가능한 대안이다. 북한에서 과잉생산되는 수산물 중 국내에서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안정을 위해 반입할 필요가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직항로 또는 육로를 개설하여 합작이나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면, 민간 내부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무관세로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산물을 반입할 수 있으므로 사업운영수지를 개선하고, 남북협력을 통한 화해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效率的 價格安定政策 推進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수매비축사업의 규모에는 한계성이 존재하는 반면, 수급조건의 변화와 책임있는 기금운영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가격안정사업에 있어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 추진되고 있는 수매비축사업을 적자개선과 가격안정사업의 내실화라는 관점에서 정책목표와 방향, 장기적인 운영방안 등을 재검토하여 가격안정정책의 추진과 운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로 사업집행과 관련하여 투명한 집행을 보장하고, 정책의 목표인 가격안정효과를 평가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성과의 평가로 활용가능한 감사나 감시체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책결과가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경제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제시함과 동시에 더불어 시행상의 문제점을 수시로 점검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수산물은 공급의 불안정성이 가격의 변동성을 가중시키는 만큼 생산량과 가격의 관측과 예측정보를 생산하여 정책에 활용하고 공공정보화함으로써 유통과정상 발생되기 쉬운 유통정보흐름의 비연속성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또 가격정책의 방향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적어도 정부정책에 대해서만이라도 생산자와 소비자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물량중심의 운영보다는 실질적으로 가격을 관리할 수 있는 가격목표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가격관측자료를 활용하고, 정부가 가격개입대를 추정하고 공표하여 투명한 정부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수산물의 저장, 보관방법에 대한 연구투자와 수급예측과 가격, 수산물 소비촉진 연구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이므로 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과학적인 연구결과의 활용을 확대·장려하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정책에 있어서도 대안적인 가격정책도구의 검토를 통해 경제정책의 상위목표나 장기적인 가격정책의 목표에 부합되는 정책으로 점차 이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매와 방출을 통한 시장에 개입하는 수매비축사업외에도 시장의 상·하한 가격을 설정하여 가격하회시 수매하고, 상회시 방출하는 가격안정대제도, 생산자단체 스스로 운영자금을 조성하여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고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조금(自助金)제도 등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적자폭을 줄이고 민간부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검토해 볼 만하다.

3. 水産物 流通關聯 基金運用 改善

수산정책분야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수산부로 독립되었지만 수산물 유통정책분야 중 수산물 가격안정과 관련된 농안기금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이는 공공기금의 운영주체는 하나의 중앙부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변화가 심한 수산물의 수급환경하에서 가격안정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조건중의 하나는 사업에 대한 재원을 독립적으로 확보하여 가격안정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상 재원을 확보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지향적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국민의 정부입장과의 상충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가격안정이나 수급조절을 위한 정부개입이 시장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상위경제정책 목표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시장경쟁체제 확립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과 권위적인 지시,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방관자 역할

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⁴⁾

수산물의 자연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생산자나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또한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적 의사결정으로부터 결정된 가격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기 곤란하게 한다. 또한 시장지향적 경제의 추구를 통해 효율적 자원배분을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수산물시장은 시장기능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수산물유통의 역할은 우선 공정한 가격형성을 통해 시장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등 시장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가격안정정책은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산업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시장실패를 시정하고, 자원배분을 원활하게 수행되게 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정책의 역할을 증진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정부의 고유한 역할인 만큼 탄력적인 정책운용은 시장지향적 경제정책을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 경제정책과 상충되지는 않을 것이다.

재원확보방안에서 보면 현재 정부재정은 일반예산, 특별예산, 공공기금 등 세 가지 형태로 집행된다. 이때 통상적으로 예산이라 하면 일반예산과 특별 예산을 통틀어 지칭한다. 그리고 예산과 기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설치목적에 있어서 예산 중 일반회계가 모든 국가재정활동에 관한 것인 반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두 번째는 재원조달과 운용에 있어 일반회계는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적 급부의 제공이 원칙인 데 반해 기금은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 원을 토대로 하여 용자사업 등 유상적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회 계는 이러한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가 혼합된 형태이다. 셋째는 운용계획의 확정에 있어 예산은 정부가 편성권을 가지고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하는 데 기금은 공공기금의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 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되어 국회에 보고되고 기타 기금 의 경우 관할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넷째는 기금의 집행상

4) 대한민국정부,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국민의 정부 경제청사진」, 1998.

의 차이이다. 예산은 합법성에 의한 통제가 가해진다면 기금은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고 있다. 다섯째로 일반회계는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배제하고 있으나 기금과 특별회계는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부처가 국회와 예산당국의 통제 등을 받지 않는 점 때문에 특정정책사업 수행을 위해 재원확보에 있어 기금을 통한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수산물 유통관련기금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일반회계를 통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이 신속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재원 마련을 검토하는 만큼 예산의 운용확정과 집행상 경직성이 따르므로 신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기금의 특징이 혼재하는 형태로서 특별세입에 대해 특정세출을 연계해서 쓸 수 있어 특정사업에 대해 특정재원을 확보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점에서 재원조달상 편리한 점은 있으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⁵⁾ 등에는 지출구조에 있어 농어촌부문에도 철저한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지출우선순위를 선정할 것이며, 2000년을 목표로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목적세를 폐지한다는 방침이 있어 특별회계가 점차 축소 내지는 폐지될 전망이다. 실현가능성이 작다. 공공기금은 특정목적 실현하기 위해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설치되는 것으로 사업상 잉여를 비롯한 민간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집행과정상의 합목적성을 갖추면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예산보다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기금을 통한 형태를 별도의 재원을 갖출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다.

공공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금을 적절한 유지가능성 문제이다. 수산부문의 가격안정기금 설치를 가정하고 예상손익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산부문에 나타난 수매비축사업 적자폭은 1995년에서 1997년 3년 평균으로 볼 때 수매비축사업에 약 570억원 투자하였는데 손실이 190억원 정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사업규모가 3년 평균과 같다고 가정하고 시장상황도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약 190억원의 손실충당이 가능해야 기금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수산부문 농안기금은 수협을 통해 민간부문에 지원되는 자금

5) 한국재정학회, 「중기재정계획수립에 대한 정책제시」, 1998.

즉, 민간가격안정사업 용자금을 지원하여 이자수입을 올렸으나 이 부분은 사업관리비 등으로 충당된다고 가정하도록 한다.

<표 V-1> 기금과 예산의 비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설치사유	-모든 국가재정의 활동	-특정사업운영 -특정자금 보유운용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적 급부의 제공이 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용자사업등 유상적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운용계획 확정·집행	-정부가 예산안 편성권을 가지며 국회가 심의·확정함.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 좌동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되며 국회보고 (공공기금) -관할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기타기금) -집행과정에서는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
수입 및 지출의 연계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좌동

자료 : 재정경제부, 「기금백서」, 1998.

또 초기재원확보에 있어서 충분한 운전자금을 확보 문제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농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 있다. 이외에도 정부출연금이나 한은차입금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 예상가능한 또 다른 수입원으로 2004년 농특세 사업종료에 따라 수산물 수입관세를 기금으로 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예상규모는 1996년 현재 약 1,692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재원을

이용하는 경우 손실보전은 물론 기초재원 마련을 위해 발생할 수 있는 한은 차입금 등 장기부채도 변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APEC의 수산물 무관세화가 확정될 경우 재원확보방안으로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다.⁶⁾ 또 농특세가 2000년까지 폐지됨과 동시에 여기에 바탕을 두는 농특회계가 폐지되면서 수입관세전입금에 대한 방향이 상위재정정책의 방향에 의해 좌우될 것이므로 현재에로서는 전입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기타 다른 수산관련 부담금과 기금에 귀속하도록 규정하는 수수료, 부담금 등도 수입원으로 충당 가능하지만 이것은 그 적용범위가 기금근거법이나 관련법에 의해 확정되어야 정확한 규모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⁷⁾ 따라서 그 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입원으로 활용가능성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수산부문 농안사업은 전체 농안사업분야 10여개 사업부문 중 4개 부문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산분야의 사업분야 외에도 농안기금의 지출대상범위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농수산물의 가공·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유통정보체계의 운영과 물류표준화 촉진, 농수

-
- 6) APEC내 무역자유화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중인 수산물 분야 320개 품목(HS 10단위)의 무관세화가 논의중임. 1998년 11월 개최된 정상회의 결과 수산물을 비롯한 조기자유화 추진 9개 분야에 대한 관세조치를 1999년부터 각국이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하고, 현재 WTO로 회부하여 협정체결을 추진키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고, APEC회원국 중 중국과 러시아는 WTO회원국이 아니므로 타결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그 안에 타결될 경우 7년동안 관세가 균등하게 감소하여 7년차에는 무관세가 적용됨. 또한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원칙에 의거 역외국가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므로 무관세화 품목 320개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됨.
- 7) 현재 농안법 제45조 기금조성에는 자금조성 내역으로 정부의 예산에 의한 출연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의 농안법 제10조4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되는 금액을 정하고 있음. 이 농안법 제10조4제2항에는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이 있음. 이는 국영무역이 인정되는 농산물의 수입으로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범위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여 농안기금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농안법 시행규칙(제3조의 3제1항의 1과 2)에 의하면 판매수입금에서 수입에 소요된 비목의 비용과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 또는 수입자로 선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품목(농산물 중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참기름)에만 부과됨.

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사업에 관련된 조사·연구·홍보·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의 사업이 있다.⁸⁾ 이러한 사업들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뿐 아니라 수매비축사업을 위해서도 중요한 기반사업들이다. 따라서 기금이 분리되는 경우 이러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만큼 전입금 규모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기금설치시 설립 당해년도 사업은 농안기금의 전입금, 가능하다면 정부출연금, 한국은행 차입금 등에 의해 의존하고, 기금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적자는 운영상 수익금이나 결산잉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수매비축사업의 재검토를 통해 수익을 확대하고 민간지원용자에 있어서도 사업자 선정과 평가에 신중을 기해 기금운영을 건실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금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우선 기금설치에 있어서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은 법률에 의해 그 설치가 명시되어야 한다.⁹⁾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운영주체가 되는 독자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가능한 형태는 다음 세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농안법에 근거하여 농안기금의 범위 안에서 한국은행내 해양수산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일체의 관리와 운영을 해양수산부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수산관련법으로 기금의 근거법령이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수산업 유통관련 법률에 의하거나 수산업기본법에 의해 수산물 가격안정기금(가칭)이나 수산발전기금(가칭)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세 가지 경우 모두 해양수산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법률이 정하는 한 보장받을 수 있다.

각각의 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농안기금내 별도계정을 설치하는 경우 재원이 농안기금내에서 일정부분만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므로 재원확

-
- 8) 농안법시행령 제30조 기금의 지출대상범위에는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1. 농수산물의 가공·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유통정보체계의 운영과 물류표준화의 촉진, 2.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사업에 관련된 조사·연구·홍보·교육훈련 및 해외시장 개척을 정하고 있음.
- 9) 예를 들어 농안기금의 경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농안기금의 설치가 명시되어 있음.

보 측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유지되고 있는 사업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의 계획과 실시 등을 독자적으로 하면서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맡게 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수산부문 농안사업의 적자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농안기금으로부터의 기금전입금 규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또 정부출연금이나 한은 차입금으로 일부재원을 충당하여 규모를 확장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수익을 통해 독자적으로 변제해야하는 부담을 안는다.

수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가칭) 제정과 더불어 수산물가격안정기금(가칭)을 설치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금운용주체가 된다. 따라서 재원의 조성에서부터 사업 운영, 결산과 그 보고까지 해양수산부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해양수산부 독자적으로 조성된 재원을 통해 운영할 수 있어 신속적이고 수산업 환경변화에 적절한 유통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적자보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전한 기금의 유지와 활용이 어렵다. 농안기금 전입규모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기금위탁 관리사업자나 사업의 범위 등 신중하게 설정해야 하는 사후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현재 농안법은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여금 정부수매사업과 기금재산을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농안사업과 목적이 중복되는 사업, 예를 들어 소비지 거래제도나 도매시장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 농림부 및 기타관련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점에서 효율적 공무수행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면할 길이 없다.

수산업·어촌기본법(가칭)에 의해 수산발전기금(가칭)을 설치하고 이 재원 중 일부를 통 및 가격안정사업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재원조달과 운영측면에서 수산정책과의 조화를 통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또 유통 및 가격안정사업의 여러 수산정책사업을 통해 기금계정내에서 공동계산되므로 적자의 보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업부문과의 재원확보 경쟁이 있고, 적자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점, 위탁사업자 선정 및 관리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수산발전기금 설치를 통해 기금중 일부를 유통부문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설치에 따른 재원은 법으로 정하는데 기금의 목적이 유통외에 다른 수산정책도 포함되므로 정부출연금과 차입금, 관련 기금이나 회계로부터

<표 V-2>

기금설치 방안 비교

구 분	농안기금내 별도계정설치	수산물가격안정기금(가칭)	수산물발전기금(가칭)
내 용	-농안기금내에서 가격안정사업의 일정부분을 별도계정으로 설치하여 해양수산물 자체 가격안정사업 실시	-농안기금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유통 및 가격안정사업 사업 실시	-수산부문의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 유통개선, 가격안정 등의 사업을 위해 설치
재 원 조 달	-농안기금내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할당받아 조성	-농안기금의 일부를 전입 받고, 기금운용수익, 한은 차입,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달	-정부출연금, 차입금, 수산업관련 전입금, 농안기금 등 수산부문관련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예 상 문제점	-적자보전문제 -기금분할에 따른 전입금 규모 문제 및 가용재원의 제약이 농안기금내에서 결정되어 주어짐	-적자보전문제 -사업의 시행이 번잡함(유통관련시설 등 지원시 타부처 협조) -기금분할에 전입금 규모 문제	-적자보전문제 -사업부문간의 경합으로 인한 재원할당문제 -농안기금 전입금 규모 문제

의 전입, 수산기자재에 대한 부과금, 관세 전입금과 기타 부담금, 운용수익금 및 기타 등 보다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조성될 수 있다. 그러나 기금설치 목적이 다양해지는 만큼 유통부문에 지원되는 규모는 다른 사업목적과의 경쟁을 통해 배분될 것이므로 원활한 자금조달은 여의치 않을 것이다. 또 기금수익금이 공동계산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간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안, 예를 들어 흑자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나 사업지원 우선순위 제고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적이 중복되는 유사기금의 통폐합 조치에 따라 기금의 근거법을 제정해야 되는 경우에 기금의 목적과 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설치함에 있어 정부예산지원 사업부문과 중복되지 않도록 기금사업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엄밀히 검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금의 성격과 목적이 가격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농안기금과 유사한 목적으로 될 경우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기금의 목적을 단순히 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수산업 구조조정과 수산물 가

격정책을 통해 수산자원 보전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추구하고, 인접 국가와의 어업협정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시켜 어가소득 유지 등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해양수산부의 독자적인 기금운영의 확보 측면에서는 농안기금내 별도계정설치가 현실성 있는 대안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수산정책과의 조화, 기금의 안정적인 유지와 운영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수산발전기금의 형태가 적합하다.

UR협상과 WTO 등 무역자유화의 조류에 따라 보조금의 형태를 띠는 기금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UR협상에서 수산물 협상은 15개 협상그룹중 농산물 그룹과 별도로 천연자원산품 그룹에 포함되어 협상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농업협정문상에 협정적용대상품목에는 수산물이 제외되어 있다.¹⁰⁾ 따라서 농산물과 수산물의 경우가 다소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UR협상 농산물분야에 있어서 허용대상으로 분류되는 정책으로 인정받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은 소비자로부터 이전이 아닌 공공재정에 의한 보조일 것과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효과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포괄적인 기준 즉, 수산물 허용보조금의 조건으로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으로 보조금 수혜자를 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거나, 특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보조금, 낙후지역 개발보조금 및 환경보조금이어야 한다는 기준만 제시하고 이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현재 협정상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최소보조 허용(De-minimis)를 생산액의 10%까지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생산액의 10% 범위내에서의 보조는 허용되고 있다.¹¹⁾ 또한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한 정부재정으로부터의 보조정책은 허용되고 있다.

10) 이재욱 외,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백서」, D94, 1994, p.194.

11) 농산물중 최소보조허용(De-minimis)인 품목별 생산액의 10%를 초과하여 감축대상이 되는 것은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등 5개 품목의 정부수매에 의한 국내보조임. 품목별 특정보조는 영농자금이차보전, 양축자금이차보전, 특수비료 판매처분손 보조가 있으나 그 합계가 총생산액의 10% 이하로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었음.

第6章 要約 및 結論

본고에서는 수산물 유통관련기금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정부수 매비축사업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현재 수산부문에 지원되는 유통관련기금은 농안기금 하나이다. 농안기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현재 농림부 주관하에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수산부문의 농안기금 집행에 있어 나타난 적자누적의 문제, 가격안정사업 집행상의 문제, 운영상의 탄력성 등으로 말미암아 수산부문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산물의 가격이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시계열분석과 그 결과로부터 충격반응분석, 분산분해분석 결과를 실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격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분석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적어도 수산물의 가격이 물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통념에 대한 검증으로는 충분할 것이다. 분석결과는 수산물의 가격은 타물가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물가상승을 유도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가격의 상·하한가 범위를 상위 물가안정정책과 조화롭게 설정한다면 가격안정대정책의 시행도 가능할 수 있다는 시사점도 조심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산물의 자체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크고, 변동성의 원인이 자체가격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크게 나타나 수산물 생산분야에 있어 가격관측 및 수급조절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타부문의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것이 가격안정정책의 무용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가격안정정책이 존재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는 다른 정책체제를 가정하는 것이므로 이 분석결과로서는 유추하기 어렵다. 개선방안으로 우선 적자보전을 위해 사업의 조수입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수산물 수입과 연계한 정부 구매방출정책을 제안하였고, 사업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생산자단체를 비롯한 민간부문의 비축사업참여 유도 및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수산물 반입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격

안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매비축제도의 재검토를 통해 가격정책 목표를 재설정하고 효율적인 수매비축사업을 위한 연구투자를 제안하였다. 운영의 탄력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해양수산부가 독자적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선택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우선 정부회계를 통한 확보방안과 기금설립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대별하여 그 가능성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기금조성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해양수산부의 독자적인 사업운영과 기금의 유지, 집행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농안기금내 별도계정설치가 적합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수산업 생산구조조정이나 지속적 수산업의 추구 등 다른 수산정책목표와 가격정책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다양한 재원조달원과 사업수익원을 가질 수 있는 수산발전기금의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독자적으로 법령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상이나 상위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위해 설치될 기금의 성격과 목적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수산물의 가격안정이라는 목적만을 단순히 가격정책목표로 둘 것이 아니라 수산정책이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목적 즉, 지속적 수산업의 추구, 수산업 구조조정, 어가소득 유지 등과 연계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체제의 강력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의 입장에서 농산물을 비롯한 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시장실패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부록에서는 일본의 가격안정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어가안정기금에 대한 소개를 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생산자단체가 주도하여 재단법인 어가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정부가 자조금 설립을 보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는 성수기때 수매외에도 가공사업이나 소비촉진사업을 통해 생산조절외에 소비분야 개척에까지 사업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參攷文獻

- 고영곤·설광언,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접근방법," 「한국 물가변동구조의 분석과 정책대응」, 한국개발연구원, 1996.
- 박우규, "공공요금과 물가," 「한국 물가변동구조의 분석과 정책대응」, 한국개발연구원, 1996.
- 유윤하·성명기,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변동의 분포와 정책적 함의," 「한국개발연구」, 1996.
- 이영훈, 「산업별 물가원인 분석 -통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1995.
- 주우일·최수철, "연근해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지지정책에 관한 소고," 「농촌경제」, 제2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79. 12.
- 정복조 외, 「농안기금 운용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유통학회, 1994. 10.
- 기획예산위원회, 「199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종합」, 1998. 9.
- 농림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결산서」, 1997.
- _____,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 농림부훈령제927호, 1998.
- _____,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도.
- 대한민국정부,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국민의 정부」 경제청사진」, 1998.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안기금사업관리업무편람」, 1998. 3.
- 재정경제부, 「기금백서」, 1998.
- 통계청, 「물가연보」, 각년도.
-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1998.
- _____, 「중기재정계획(1998~2002년)의 주요과제」, 1998. 1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1997. 12.
- 한국재정학회, 「중기재정계획수립에 대한 정책제시」, 1998. 11.
- 해양수산부, 「1998년도 수산물정부수매비축사업시행지침」, 1997. 12.

- _____, 「1998년도 수산부문 농안기금 사업시행지침 <민간수매지원·산지유통개선·소비자유통개선>」, 1997. 12.
- _____,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년도.
- Engle, R. F. and Sam Yoo,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Representation, Estimation, and Testing," *Long-Run Economic Relationships -Readings in Cointegration* edited by R. F. Engle and C. W. J. Granger, Oxford Univ. Press., 1991.
- Hamilton, James, *Time Series Analysis*, Princeton Univ. Press, 1994.
- Kim, Chang-Jin, *Lecture Note on Econometrics II for Graduate in Korea University*, Pullman, 1996.
- Kim, Chang-Jin, and Charles R. Nelson, *State-Space Models with Regime Switching: Classical and Gibbs Sampling Approaches with Applications*, The MIT Press, forthcoming.
- Streeten, Paul, *What Price Food*, Cornell Univ. Press, 1987.
- Tomek, William G. and K. L. Robinson, *Agricultural Product Prices*, Cornell Univ. Press, 1990.

日本魚價安定基金

1. 어가안정기금제

가. 어가안정기금의 설립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일시적인 대량생산으로 값이 떨어진 원료어를 수매하여 가공한 후 소비지 가격을 고려하면서 방출하는 수산물 조정보관사업에 대해 국가가 보조하여 왔다. 그리고 1976년 재단법인 어가안정기금을 설립하여 각종 조정보관사업에 대한 기금조성과 필요경비를 대부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나. 어가안정기금의 목적

어업자단체 등이 실시하는 주요수산물의 조정보관사업에 대하여 조성금 교부와 필요한 자금대부 등을 실행함에 따라 산지 및 소비지 수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산물의 소비확대 사업 등에 대한 조성을 행하여, 어업경영과 국민소비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 어가안정기금의 경과

1973년말 오일·쇼크이후 연료비 및 자재비의 상승에 따라 어업경영이 불안정하게 된 것을 감안하여, 정부는 1975년부터 1984년까지 어업자단체 등이 공판체제를 확립하여 저어가에 원료어를 사들여 필요에 따라 가공한 후 조정보관하여, 소비지가격을 고려하면서 방출하는 수산물조정보관사업에 대한 보조를 실시했다.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와 관련단체의 협조에 의해 「재단법인 어가안정기금」이 1976년 12월 2일에 설립되어, 정세의 변화에

즉용하여 각종의 조정보관사업에 대한 조성과 필요자금의 대부 등을 실시하고 있다. 1990년부터는 어업생산조정조합 등이 생산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기금은 수산물조정보관 특별사업에 대해 고율로 조성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수산물의 수요확대사업 및 어업생산조정조합의 설립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성하고 있다. 더욱이 수산물의 소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집단급식 등의 외식산업에 대하여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인 '가정의 소비용 수산물유통촉진 파이롯트 사업'에 대해 사업실시자를 위해 필요경비를 조성하였다. 1992년부터는 산지에 고도가공유통기술을 도입하여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함과 함께 소비자의 요구(needs)에 대응한 食料(食料)의 제공 및 새로운 유통루트(root)의 개척을 추진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가공개선 모델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실시자들을 위해 필요경비조성을 실시하고 있다. 1995년부터 어획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광역적으로 유통되는 특산품적인 수산물(이하 특정수산물)이 조정보관사업의 대상에 추가되어, 수산물가격안정법인이 행하는 조정보관사업을 위해 필요경비를 조성하고 있다.

라. 재원

현재 정부에서 사업자단체(전어련, 원양선망어협 등 8개조합)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20억엔, 정부가 대부한 46억엔, 그리고 조정보관사업으로 생긴 잉여 44억엔을 합친 110억엔을 가지고 어가안정기금으로 수산물조정보관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마. 사업대상 수산물

조정보관사업의 대상은 다획성 어종(고등어, 꽁치, 정어리, 전갱이, 오징어), 가다랭이 참치, 냉동어육, 김, 미역, 냉동어육, 가리비 등이다. 특히 김의 경우 다량 생산으로 어업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어가안정기금을 통해 조정보관사업을 실시하여 커다란 효과를 보고 있다.

바. 보조

어가안정기금은 사업주체에 대해 조정보관사업에 필요한 매입대금금리, 냉장보관경비 등의 1/2을 조성한다. 조정보관품의 방출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실액의 8할(특별사업은 전액)을 무이자로 대부한다.

2. 사업

- 가. 조정보관사업 실시경비조성
- 나. 조정보관사업 실시에 의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사업을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대부
- 다. 조정보관사업의 중점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한 후, 특히 필요에 따라 주요수산물에 대한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
- 라. 조정보관사업 실시에 의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손실보전
- 마. 수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한 사업실시 경비조성
- 바. 어업생산조정조합 설립 등에 필요한 사무에 요구되는 경비조성
- 사. 전 각호의 사업에 부대사업
- 아. 기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사업실시 개요

- 가. 사업주체는 조정보관사업의 실시에 즈음하여 「사업실시기준(실시방침, 최저매입가격 등)」, 「사업실시계획(월별 매입 및 판매)」 등을 작성하여, 어가안정기금을 경유하여 수산청장관의 승인을 득한다.
- 나. 냉동가공업자는 사업주체와의 매입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어종의 시장현황이 최저가격을 하향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이것을 최저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하여 냉동가공한다.
- 다. 사업주체는 위 나항에 의해 매입된 생선의 냉동가공품을 매입한다.
- 라. 사업주체는 위 다항에 의해 매입된 냉동가공품을 조정보관하여 수요자의 가격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방출한다.

마. 기금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조정보관사업에 필요한 매입대금금리, 냉장 고보관경비 등의 1/2 (특별사업은 2/3, 특정수산물은 1/3)을 조성한다. 또 조정보관품의 방출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액의 8할(특별사업은 전손실액)을 무이자 대부한다(단, 특정수산물 제외).

수산물조정보관사업, 대상수산물, 대상어종

사업종목	대상수산물	대상어종
다확성어 조정보관사업	- 생선·가공용의 고등어·꽩치·정어리·전갱이·오징어 (갑오징어 제외)	- 고등어·꽩치·정어리·전갱이·오징어 (갑오징어 제외)
김·미역 조정보관사업	- 건조김·건조미역·염장미역	
냉동어육 조정보관사업	- 냉동어육	- 명태·이면수
가다랭이·참치류 조정보관사업	- 가다랭이·날개다랑어·눈다랑어·황다랑어의 선상 동결품	- 가다랭이·날개다랑어·눈다랑어·황다랑어
어박·어분 조정보관사업	- 어박·어분	
어업용사료 조정보관사업	- 어업용 사료재료의 고등어·정어리	- 고등어·정어리
가리비 조정보관사업	- 가리비	- 가리비
특정수산물조정보관사업	- 생선·가공용의 이면수	- 북해도내에서 양륙된 이면수
	- 물치다랭이류	- 고우치현내에서 양륙된 물치다랭이
	- 큰실말(해초, 일본명 모즈꾸)	- 오키나와내에서 수확된 큰실말